

# 창업 준비 직장인 관련 세무와 절세방안

---

# 목 차

---

1. 종합소득세
  - 직장인
  - 사업자
2. 퇴직소득세
3. 부가가치세

# / 종합소득세 /

---

- 개요
- 직장인 연말정산
-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사업자의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 사업자의 장부 작성 신고와 절세
- 사업자 공제 항목
-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소개

---

# 개요

# 종합소득세 산출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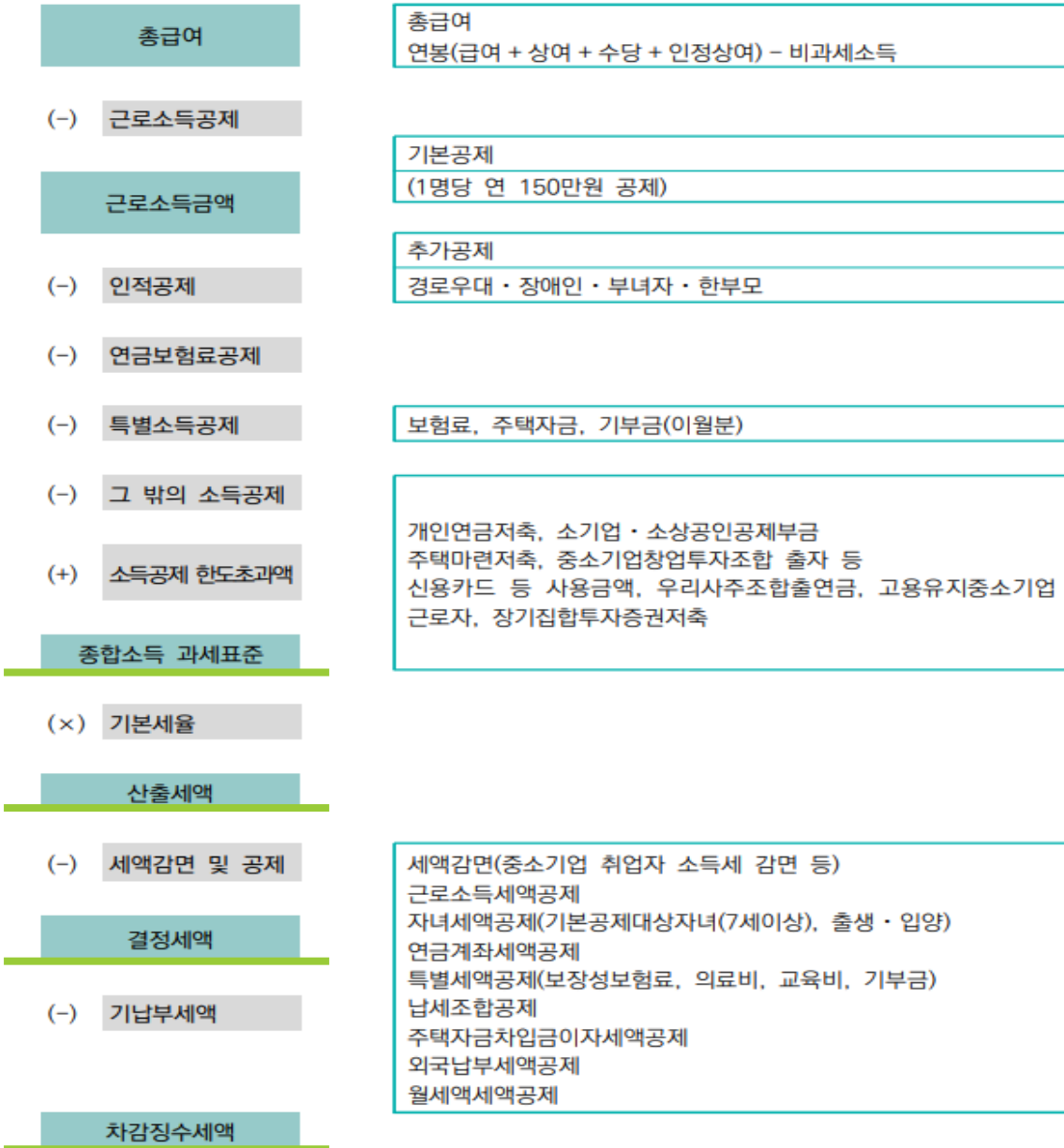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 직장인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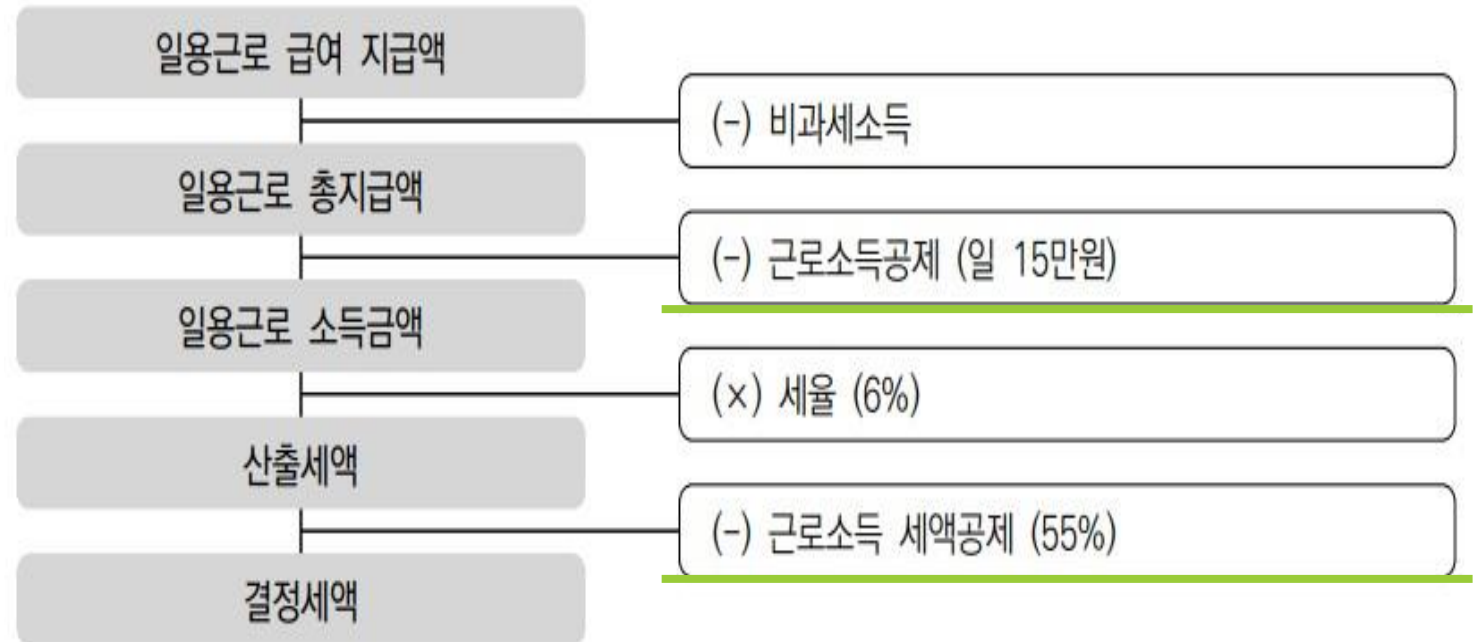
# 세액계산 흐름도



# 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원 이하	6%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 (참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

#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 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참고) 부양가족 공제가능 요건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요건 판단(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 제외)

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공제가능 요건
종합소득 (①)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sup>1)</sup>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sup>2)</sup>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개정)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 확대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원 <sup>3)</sup>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 과세 선택	
퇴직소득(②)	퇴직금=퇴직소득금액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③)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 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차감 후 100만 원 이하	
합계액			①~③ 합계액 100만 원 이하

1)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 분리과세 대상

2)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3)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총연금액 516만 원-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 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특별소득공제 2

특별 소득 공제	주 택 자 금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p> <p>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p> <p>&lt;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gt;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p>
			<p>공제 한도액</p> <p>- '15.1.1. 이후 차입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amp; 고정금리 : 1,8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기타 : 500만원</li> <li>· 상환기간 10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li> </ul> <p>&lt;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gt;</p> <p>-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 : 1,500만원)</p> <p>-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p> <p>-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p> <p>&lt;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gt;</p>

# 그 밖의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40%)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이하	min(300만, 총급여 20%)
			7천만~1.2억	250만
			1.2억초과	200만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각 100만원 추가(최대 600만원)	

\* 신용카드등 대중교통 이용금액('22.7~12월) 공제율 40%→80%로 한시적 상향

\*\*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사용액 증가분(5% 초과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각 20%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2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 벤처기업 출자: 100%·70%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 그 밖의 소득공제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 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감면 & 세액공제 1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200만원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3.12.31. 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lt;공제한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b>74만원</b></li> <li>·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b>66만원</b></li> <li>·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b>50만원</b></li> </ul>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감면 & 세액공제 2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7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 계좌	연금 저축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	
			50세미만	50세이상			
	퇴직 연금	5.5천만원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 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과학 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만기시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감면 & 세액공제 3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2%(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5%(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p>① 난임 시술비</p> <p>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20%, 30%)**</p> <p>*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p> <p>·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한도 없음</p> <p>·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p> <p>**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p>	<p>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li> <li>-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li> <li>-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li> <li>-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li> <li>-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td> <td>㉠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td> </tr> <tr> <td>나. ㉡ + ㉢ ≥ 총급여액 × 3% &gt; ㉠인 경우</td> <td>㉠ + ㉡ - (총급여액 × 3% - ㉢)</td> </tr> <tr> <td>다. ㉠ + ㉡ + ㉢ ≥ 총급여액 × 3% &gt; ㉡ + ㉢인 경우</td> <td>㉠ - (총급여액 × 3% - ㉡ - ㉢)</td> </tr> </tbody> </table> <p>※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p>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세액감면 & 세액공제 4

교육비	취학전 아동	<p>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p> <p>* 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li> <li>·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li> <li>·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li> </ul>	<p>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p>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대학입학전형료(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세액감면 & 세액공제 5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li> <li>·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li> </ul>	
		기부금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li> </ul>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li> </ul>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한도</li> <li>·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li> </ul>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li> <li>·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li> </ul>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 사업자의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 경비율 적용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구분	귀속연도	기준수입금액
	2021년 귀속	2020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구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주요경비의 종류

##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주요경비 증명서류의 비치·보관

- ◆ 주요경비 증명서류는 장부작성 신고와 동일
- ◆ **매입비용, 임차료**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출
- ◆ **인건비** 증명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지급 관련 기타의 증명서류



## 근로소득공제 (비교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적용방식)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 원

---

# 사업자의 장부 작성 신고와 절세

# 기장의 종류

구분	대상자	법조문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간편장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li> <li>•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li> <li>※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li> </ul>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 복식부기 장부종류

- ◆ 재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 현금흐름표
- ◆ 자본변동표
- ◆ 주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 작성장부의 종류 판단 기준

- ◆ **복식부기 작성대상**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
- ◆ **간편장부 작성대상**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자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② 계정 과목	③ 거래 내용	④ 거래처	⑤수입(매출)		⑥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 작성 신고시 제출 서류

-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74호 서식)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 ◆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미제출

# 경비 인정 정규증명서류

-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계산서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 & 일반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 경비 인정 기타 증명서류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 장부 무기장시 불이익

## ●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 단,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작성시 혜택

##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

# 사업자 공제 항목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근로소득자와 동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소득자와 동일

#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근로소득자와 동일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http://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대상자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외	연 7만원

---

#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소개

# 비과세저축

## ◆ 비과세 저축: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 원 이하	202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 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 : 연간 급여액 <b>5천만원 이하</b></li> <li>• 종합소득자, 농어민 : 종합소득금액 <b>3천 8백만원 이하(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b></li> </ul> </li> <li>◆ 일반형 : 서민형 이외의 자</li> </ul>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형 : 본인이 직접 운용</li> <li>◆ 일임형 : 운용전문가에게 일임</li> <li>◆ 신탁형 : 운용지시</li> </ul>
운용대상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투자손실	◆ 투자손실액만큼 <b>비과세한도 추가 인정</b>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년 이후</b>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li> <li>◆ <b>3년 미만</b>에 중도해지시 <b>감면세액 추징</b></li> </ul>
계약기간	◆ 3년 이상(계약만료일 전 연장 가능)
납입한도	◆ <b>5년간 총납입금액 1억원 이하(연간 2천만원 이하)</b>
세금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b>4백만원 이하</b></li> <li>• 일반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b>2백만원 이하</b></li> </ul> </li> <li>◆ 저율분리과세 : 이자소득 등의 <b>비과세한도 초과분</b></li> </ul>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li> <li>◆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li> <li>•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li> <li>•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li> <li>•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li> <li>•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li> <li>• 군인연금법상 군인</li> <li>•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li> <li>• 별정 우체국법상 별정 우체국 직원</li> </ul> </li> </ul>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지급</li> <li>◆ 일시금 : 55세 이상 가입자가 일시금 선택시</li> </ul>
운용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부담</li> </ul>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특정한 사유* 발생시)</li> <li>*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li> </ul>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까지 가능(특정한 사유 발생시)</li> </ul>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부담금 합계액 : 1,800만원 이하</li> </ul>
세금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li> </ul>

# / 퇴직소득세 /

---

- 퇴직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퇴직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 ◆ 퇴직소득의 종류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선원법·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은 퇴직소득세 **비과세**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 ◆ 적용방법

- **2020.1.1.이후** 퇴직시부터 **적용비율 100%** 적용

# / 부가가치세 /

---

- 등록된 사업자 관련 제세금
-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절세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중요성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증명서류

---

# 등록한 사업자 관련 제세금

# 등록 사업자 관련 세금 개관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4. 25. 7. 1.~7. 25. 10. 1.~10. 25. 다음 해 1. 1.~1. 25.	1. 1.~3. 31.의 사업실적 4. 1.~6. 30.의 사업실적 7. 1.~9. 30.의 사업실적 10. 1.~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 1.~7. 25. 다음 해 1. 1.~1. 25.	1. 1.~6. 30.의 사업실적 7. 1.~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 해 5. 1.~ 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 15.고지)	11. 1.~ 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 1.~2. 10.		1. 1.~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 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절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사업 구분

## ◆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 면세사업과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발급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판단기준

**Q**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적용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A**
-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②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 과세사업의 종류

## ◆ 일반과세와 일반과세자

- 10% 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

## ◆ 간이과세와 간이과세자

- 1.5%~4% 세율 적용, 매입액의 0.5% 공제
-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 간이과세 포기

- ◆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공급가액의 1%

###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중요성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기 (질문/과세기간)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기 (답변/과세기간)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21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22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증명서류

# 매입세액 증명 적격 서류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② 간이 신규자
- ③ 면세사업자
- ④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발간한 안내책자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